

# 의료분야 사이버 보안,

## 당신의 소중한 신고로부터 시작됩니다.



### 의료기관이 랜섬웨어 또는 해킹 피해를 보았다면?

▶ **의료법 제23조의3(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)에 근거하여 의무적으로 의료정보보호센터로 신고해야 합니다.**

#### 의료법 제23조의3(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)

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진료정보가 유출되거나 의료기관의 업무가 교란·마비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(이하 "진료정보 침해사고"라 한다)가 발생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즉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
####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2(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방법)

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진료정보 침해사고(이하 "진료정보 침해사고"라 한다)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, 전화, 팩스, 전자우편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.

1. 의료기관의 명칭
2.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발생일시
3. 진료정보의 유출 범위 등 피해내역
4.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대응을 위한 기술지원 요청사항

※신고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 위반으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
### 침해사고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

신속한 원인 파악	위험 요소 제거	추가 피해 확산 방지
취약점 진단	취약점 조치	재감염 및 복구비용 방지

### 침해사고 신고 방법

	의료정보보호센터( <a href="http://www.hisc.or.kr">www.hisc.or.kr</a> ) 침해사고신고 메뉴		
	전화 문의 02-6360-6500		이메일 문의 <a href="mailto:cert@hisc.or.kr">cert@hisc.or.kr</a>

### 침해사고 신고 후 받을 수 있는 지원

<p>(사고조사) 침해사고 원인분석</p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· 사고유형 및 침투경로 등 파악</li><li>· 침해사고 재발방지대책 마련</li><li>· 시스템 및 보안장비 점검 지원</li></ul>
<p>(사고예방) 보안서비스 지원</p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· 취약점 진단 서비스 제공</li><li>· 홈페이지 악성코드 탐지서비스 제공</li><li>· 해킹메일 모의훈련 지원</li><li>· 정보보안 교육 지원</li></ul>